

한반도 르네상스 구현을 위한

VIP 리포트

-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외국인 체류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발행인 : 한 상 완
편집주간 : 김 동 열
편집위원 : 주 원,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과 시사점

-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외국인 체류자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i
1.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체류자	1
2.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	2
3. 시사점	11

< 요약 >

1. 국내 체류 외국인 지속 증가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6만 명으로 2000년 49.1만 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9.4%에 이른다.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3년 3.1%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 오너스가 임박한 한국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2. 국내 외국인 유입의 현황

이에 국내 유입 외국인 체류 현황을 자격별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내 유입 외국인을 체류자격별로 ① 전문인력, ② 단순기능, ③ 관광, ④ 유학, ⑤ 결혼·이민, ⑥ 영주자, ⑦ 기타의 7개 부문으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적별·성별 특징)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2013년 기준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인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2003년 36.2%에서 약 13.2%p 확대된 수준이다. 이처럼 중국인 체류자가 급증한 것은 2007년부터 외국국적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가 시행되면서 한국계중국인 체류자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성별로는 남성 체류자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성 체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체류 외국인 중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2003년 59.9% 대 40.1%였으나, 최근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국제결혼 여성 이주인이 증가하는 등 2013년에는 55.2% 대 44.8%로 여성 비중이 상승하였다.

(체류 자격별 특징) 첫째, **단순기능인력이 급증하였다.** 단순 기능인력은 2003년 16.0만명에서 2013년 49.9만명으로 약 3.1배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3년 기준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31.7%로 전체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전문인력의 경우, 그동안의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정체되고 있다.** 국내 체류 전문인력 규모는 2003년 2.3만명에서 2013년 5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3.5%에서 3.2%로 축소되었다. 더욱이, 단기취업, 회화지도, 예술홍행 등을 제외한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등 정책적 유입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전문인력 규모는 2013년 현재 약 2.5만명으로 전체 전문인력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셋째, **최근 들어 국내 유학생 규모는 물론 비중도 축소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 규모는 2003년 약 1.0만명에서 2013년 약 8.2만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11년 약 8.8만명을 정점으로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 전체

외국인 체류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9%에서 2013년에는 5.2%로 하락하였다. 한편, 국적별로는 2013년 기준 중국이 65.1%, 몽골이 5.1%, 베트남이 4.6% 등을 차지해 아시아권 출신 유학생들에 대한 편중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한국도 개도국 여성의 결혼이주 비중이 높은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결혼 이민자 중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2003년 6.5% 대 93.5%, 2013년 동 14.6% 대 85.4%로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8년부터는 결혼이민 여성 규모가 10만명을 넘어서 2013년에는 약 13만명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다섯째, 중국 중심 개도국 지역 관광객 유입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관광 체류 외국인의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 비중이 2003년 19.1%에서 2013년 12.0%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 비중은 동기간 77.1%에서 83.6%로 상승하였다. 이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2003년 30.4%에서 2013년 40.3%로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영주자의 경우, 대만 중심에서 한국계 중국인으로 변화되고 있다.** 2003년 기준 국적별 영주자 비중은 대만이 99.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42.3%로 급상승한 반면 대만은 29.3%에 불과했다. 2013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56.0%, 중국 16.5%, 대만 13.9%로 점차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비중이 상승하였다. 이는 2010년부터 외국국적동포의 영주자격 취득을 허용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3. 시사점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완화, 출산율 제고 등을 통한 국내 잠재성장률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보장부담 및 사회갈등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도 커지게 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해 전체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활용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단순기능인력의 경우에도 숙련 수준과 직종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과 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전문인력 유입 강화를 위한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통해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및 현장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국내 유입 전문인력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토양 조성이 시급하다. **넷째,** 유학생 유치에 우수 해외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의미가 큰 만큼 유학생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안정적인 외국 고급 인력 유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중국 등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관광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선진국 관광객 유입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국내 영주 외국 국적동포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는 물론 교육·복지 등 경제·사회 측면의 제반 정책적인 지원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

1. 국내 체류 외국인 지속 증가

○ 국내 체류 외국인의 규모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중도 확대

- 체류 외국인 규모 지속 증가 속 불법체류자 비중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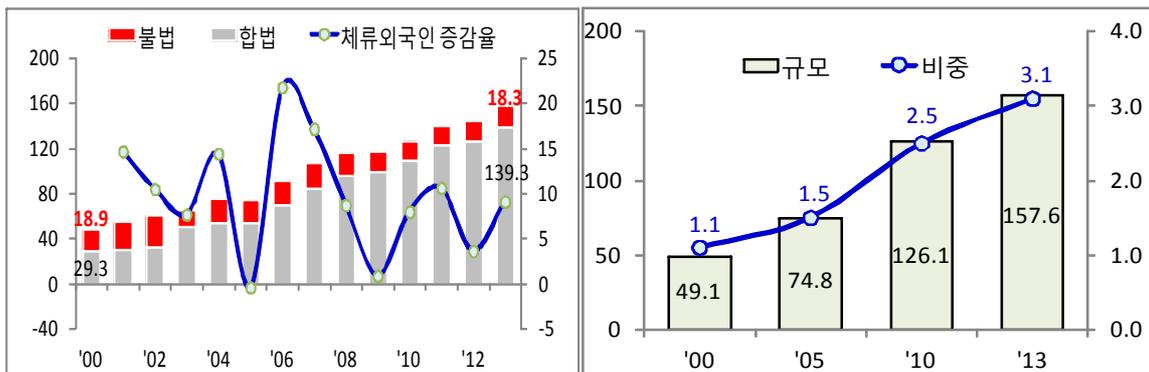
- 2013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157.6만 명으로 2000년 49.1만 명에 비해 약 3.2배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9.4%에 이룸
- 한편,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중은 2000년 약 39%였으나, 2013년에는 약 12%로 급감

-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확대되고 있으나, OECD 평균보다 낮음

- 국내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중도 2000년 1.1%에서 2010년 2.5%, 2015년 3.1%로 확대되고 있음
- OECD에 따르면 총 인구 대비 외국인 인구 비중은 OECD 평균 8.3%로 한국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

○ 인구 오너스가 압박한 한국의 경우,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인적자본 증대를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가 기대되는 한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 대응이 필요

< 국내 합법·불법 체류 외국인 추이 > <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 및 인구 대비 비중 >
(만 명) (%) (만 명)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 1) 체류 외국인이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장·단기 국내 외국인 체류자를 의미하는데 단기체류자는 체류 기간이 90일 이하 사증으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하며, 장기체류자는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자를 말함.
2) 불법체류자는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거나 출국하지 않고 체류하는 자를 의미함.

1) 다만, OECD의 외국인 인구는 영구적/준영구적 이주(permanent or permanent-type migration), 한시적 이주(temporary migration) 등으로 구성된 통계로 등록 외국인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의 체류 외국인 통계와는 차이가 있음. OECD 기준에 따르면 한국은 2.0% 수준. OECD, *Intra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4.

2.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

① 분석 개요

○ 체류 자격별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체류 자격별로 7개 부문으로 나뉘며,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함
 - ① 전문인력, ② 단순기능, ③ 관광, ④ 유학, ⑤ 결혼이민, ⑥ 영주자, ⑦ 기타의 7개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
- 분석기간은 단순기능 부분의 비전문취업(E-9) 체류 자격이 신설된 2003년부터 2013년까지로 함
- 분석에 이용한 자료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이나, 분석 목적에 따라 세부 자격을 통합 또는 분리하여 활용

< 체류자격별 국내 체류 외국인 분석 개요 >

구 분	세부 자격
① 전문인력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② 단순기능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③ 관광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관광취업(H-1), 관광상륙(T-1)
④ 유학	유학(D-2), 한국어연구(D-4-1)
⑤ 결혼이민	결혼이민(F-6)
⑥ 영주자	영주(F-5) : 동포 제외
⑦ 기타	외교(A-1), 공무(A-2), 협정(A-3), 일시취재(C-1), 문화예술(D-1), 기술연수(D-3), 일반연구(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기타(G-1)

자료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작성.

- 주 : 1) 단순기능 부분의 비전문취업(E-9)은 2003년, 방문취업(H-2)은 2007년, 선원취업(E-10)은 2010년 신설.
- 2) 투자·경영 부분의 상사주재(D-7)는 2009년 주재(D-7)로, 관광부문의 단기방문(C-3)은 2011년 단기상용(C-2)과 단기종합(C-3)이 통합, 유학·연수 부분의 산업연수(D-3)는 2012년 기술연수(D-3)로 명칭 변경.
- 3) 결혼이민은 체류 외국인 가운데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을 가진 자이며, 2009년 이전에는 배우자(F-1-3) 및 국민배우자(F-2-1), 2010년 이후에는 국민배우자(F-2-1), 국민배우자(F-5-2), 결혼이민(F-6, 2011년 12월 신설)임.

② 국내 외국인 체류자의 특징

○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인을 중심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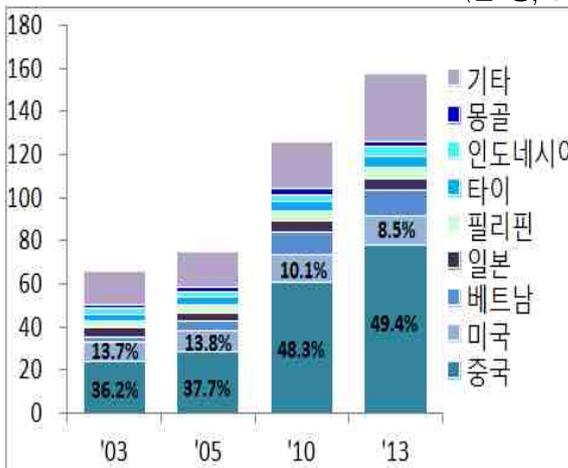
-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은 전체 체류외국인의 절반 가량을 차지
 - 중국(한국계중국인 포함)이 4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미국 8.5%, 베트남 7.6%, 일본 3.6%, 필리핀 3.0% 순임(2013년 기준)
- 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 출신 체류 외국인 비중 확대
 - 중국의 비중은 2003년 36.2%에서 2013년 49.4%로 확대, 이는 2007년 외국국 적동포에게 취업을 허용하는 방문취업제의 도입으로 한국계중국인 체류자가 증가하였기 때문
-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출신 체류 외국인 비중 축소
 - 미국의 비중은 2003년 13.7%에서 2013년 8.5%로 축소, 일본의 비중 역시 2003년 6.4%에서 2013년 3.6%로 축소

○ 성별로는 남성 체류자 비중이 감소한 반면, 여성 체류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체류 외국인 중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2003년 59.9% 대 40.1%였으나, 최근 동남아 등지로부터의 국제결혼 여성 이주민이 증가하는 등 2013년에는 55.2% 대 44.8%로 여성 비중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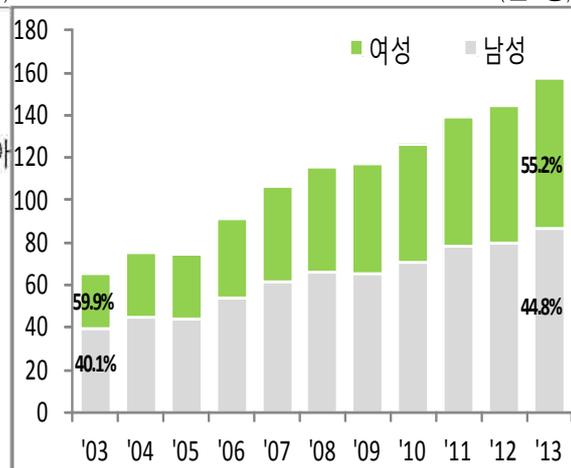
<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이 >

(만 명, %)



< 성별 체류 외국인 추이 >

(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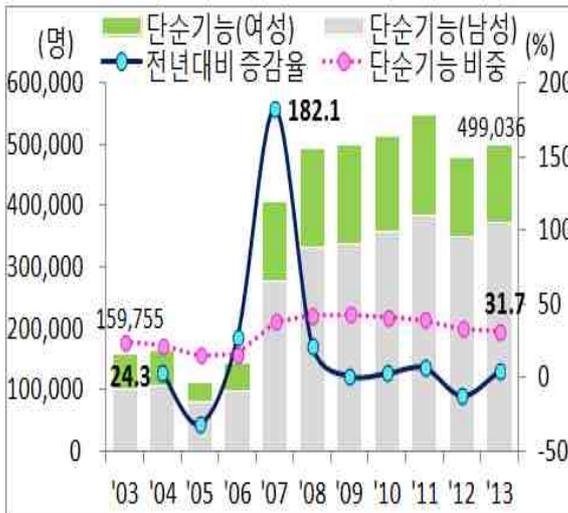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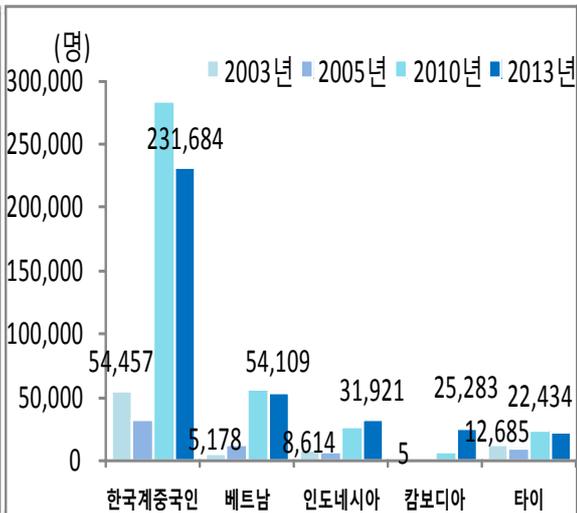
○ 단순기능인력이 급증

- 단순기능인력은 고용허가제하의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
 - 고용허가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단순기능인력 분야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인력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할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 한국에 체류하는 단순기능인력은 2003년 159,755명에서 2013년 499,036명으로 연평균 12.1% 증가
 - 한편, 동기간 내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단순기능인력의 비중은 2003년 24.3%, 2010년 40.7%, 2013년 31.7%로 가장 높은 비중은 차지
 - 이는 고학력화에 따라 3D 업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저숙련 노동자들의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기 때문
- 국적별 단순기능인력의 비중은 한국계중국인이 46.4%, 베트남이 10.8%, 인도네시아가 6.4%, 캄보디아가 5.1%, 타이가 4.5%의 비중을 차지(2013년 기준)
 - 한국계중국인은 2003년~13년간 약 4.3배 증가, 이는 2007년 방문취업제가 도입되어 동포들이 사증 유효기간 내 자유로운 출입국이 허용되었기 때문

< 단순기능인력 추이 >



< 단순기능인력 배출 상위국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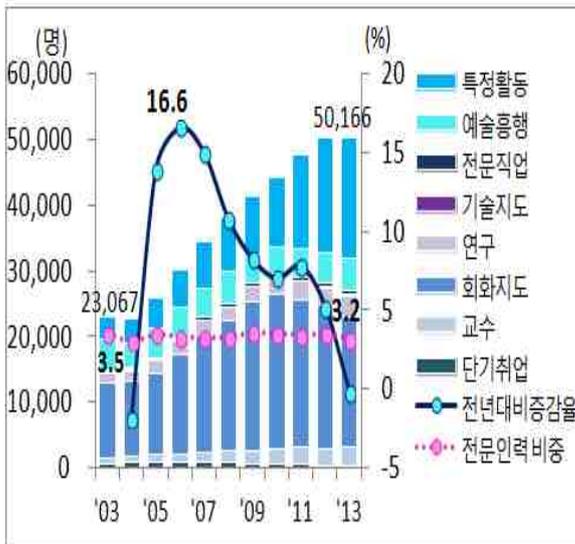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1) 단순기능인력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단순기능인력의 비중을 의미.
 2)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이 변화는 2013년 기준 상위 5위 국가만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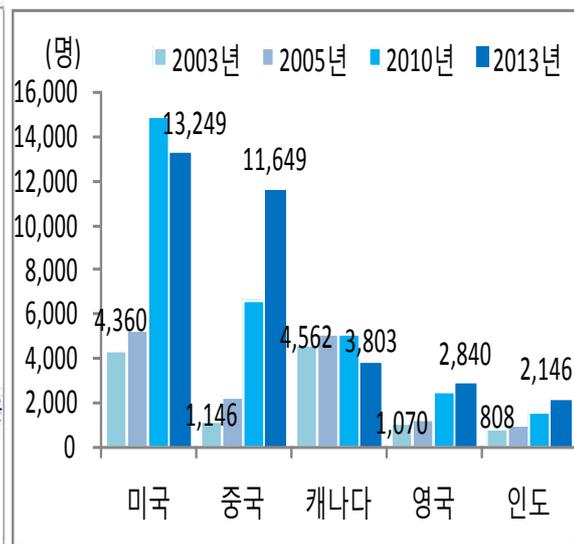
○ 전문인력의 경우, 그동안 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정체

- 법무부 분류 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은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
- 정부는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Gold Card 사업, Science Card 제도, Contact Korea 설치, Point System 도입 등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적은 미흡
 - 전문인력 규모는 2003년 2.3만 명에서 2013년 5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전체 체류 외국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3.5%에서 3.2%로 축소
- 더욱이, 단기취업, 회화지도, 예술홍행 등을 제외한 교수,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등 정책적 유입 노력이 강화되고 있는 전문인력 규모는 2013년 현재 약 2.5만 명으로 전체 전문인력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국적별 단기취업, 회화지도, 예술홍행 등을 제외한 전문인력 비중은 중국이 41.6%, 미국이 10.8%, 인도가 8.6%, 일본이 5.8%, 베트남이 3.7%의 비중을 차지(2013년 기준)

< 전문인력 추이 >



< 전문인력 배출 상위국 추이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 1) 전문인력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전문인력의 비중을 의미.
- 2)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이 변화는 2013년 기준 상위 5위 국가만 서술.

※ 정부의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 정부는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도입·시행

- 기업의 글로벌 고급인재 유치를 지원하는 Contact Korea, Hunet Korea 등을 설치·운영하고, 전문인력의 비자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을 위한 점수제(Point System) 도입, 새로운 비자제도 도입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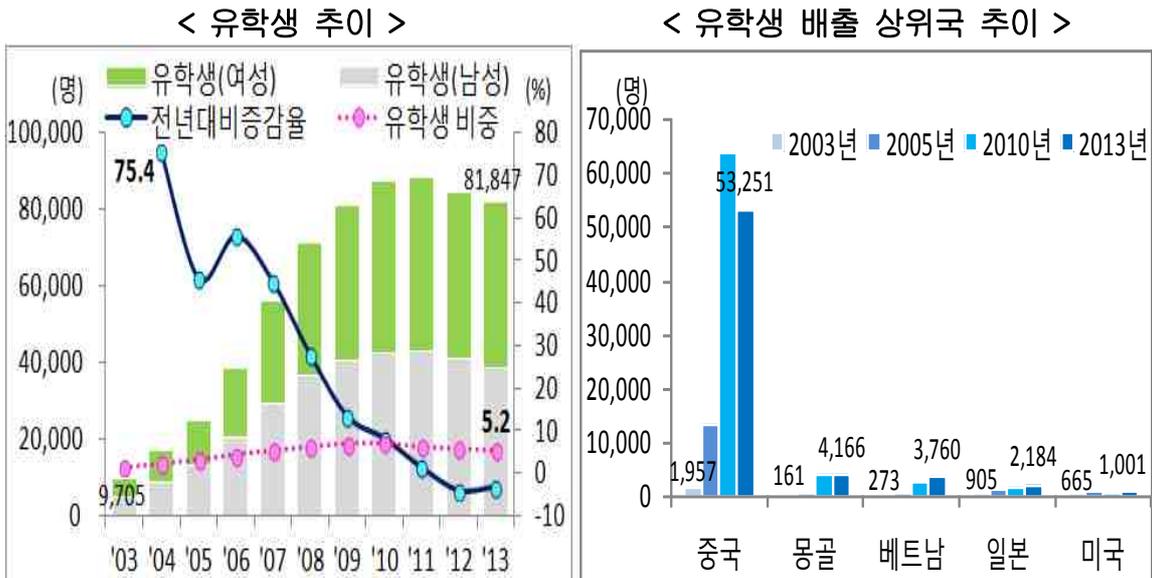
< 정부의 전문인력 유치 정책 >

구분	내용
Gold C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기술분야의 해외고급기술인력에게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편의를 제공 · 대상 : 8개 첨단기술분야(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에너지) 관련 공·사기관에서 근무하고자하는 외국인 · 자격 : 해외 석사학위 이상, 국내 학사학위 이상, 해외학사학위(해당 분야 경력 1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Science C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술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해외고급과학기술인력에게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편의를 제공 · 대상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기업부설(연)에 근무하고자 외국인 · 자격 :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3년 이상 경력), 박사학위 소지자
Contact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우수인재, 외국인 전문 인력을 전 세계 100개 KOTRA 해외조직망을 통해 발굴부터 비자추천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
HuNet Kore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경제단체 등 민간전문가들이 해외에서 글로벌고급인력을 발굴하고 법무부로 추천하여 비자신청에서부터 심사에 이르는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시스템
점수제(Point Syste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에서 1년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 전문인력(E-1~E-7)이 거주(F-2)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연령, 학력, 소득 등을 점수화하여 역량과 자질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일정점수 이상을 취득한 전문인력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
전문취업자격부여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현장에서 숙련 기능인력으로 양성된 우수한 자질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거주(F-2) 자격을 부여하여 선별 정주를 허용

자료 : IOM이민정책연구원(2014)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3) 자료를 참고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최근 들어 국내 유학생 규모는 물론 비중도 축소

- 유학생은 유학(D-2), 한국어연구(D-41) 등의 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
- 정부는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Study Korea Project)을 수립하여 유학생 유치의 양적 성장을 달성
- 외국인 유학생 체류자 규모는 2003년 1.0만 명에서 2013년 약 8.2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나, 2011년 약 8.8만 명을 정점으로 규모가 축소
 -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6.9%에서 2013년 5.2%로 하락
- 국적별 유학생의 비중을 살펴보면, 중국이 65.1%, 몽골이 5.1%, 베트남이 4.6% 등을 차지해 아시아권 출신 유학생들의 편중현상이 심함(2013년 기준)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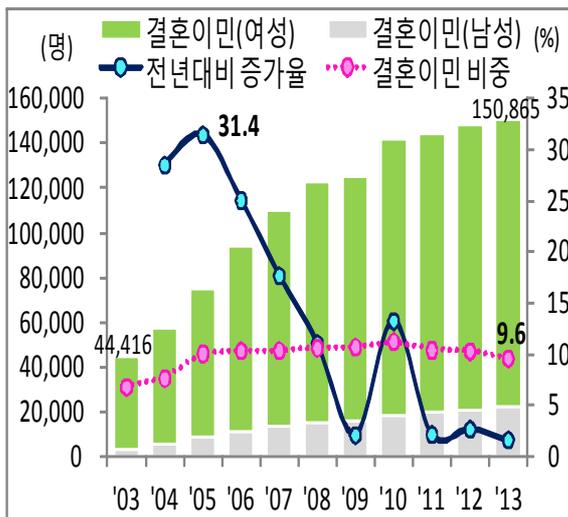
- 주 : 1) 2003년은 유학(D-2) 비자소지자만을 의미, 2004년부터는 한국어연구(D-4-1) 비자소지자 포함.
 2) 유학생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유학생의 비중을 의미.
 3) 유학생 배출 상위국 추이는 2013년 기준 상위 5위 국가만 서술.

2) 다만, 이는 법무부에서 규정하는 유학생의 정의임. 교육부에서는 현재 등록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유학생으로 간주하여 외교관 자녀 등 D-2비자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도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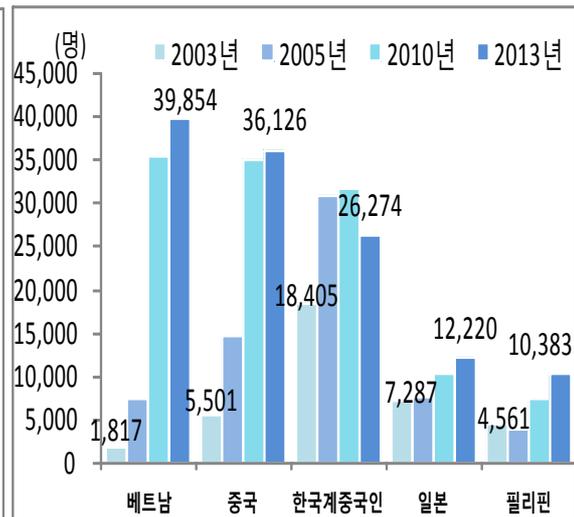
○ 한국도 개도국 여성의 결혼이주 비중이 높은 글로벌 상향혼(Global Hypergamy)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F-6)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
- 한국에 체류하는 결혼이민자는 2003년 44,416명에서 2013년 150,865명으로 약 3.4배 증가하였으며, 연평균증가율은 13.0%에 이룸
 - 이는 만혼화, 출산율 급락 등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국제결혼이주여성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여성을 중심으로 한 결혼·이민 체류가 급증했기 때문
 - 한편, 동기간 내 전체 체류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2003년 6.8%에서 2010년 11.2%로 확대되었으나, 2013년 9.6%로 다소 축소되었음
- 결혼 이민자 중 남성과 여성의 성비는 2003년 6.5% 대 93.5%, 2013년 동 14.6% 대 85.4%로 여성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08년부터는 결혼이민 여성 규모가 10만 명을 넘어서 2013년에는 약 13만 명 수준으로 확대

< 결혼이민자 추이 >



< 결혼이민자 배출 상위국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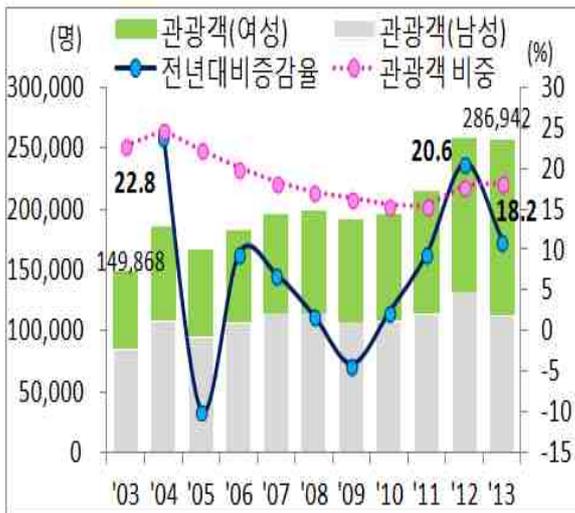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 1) 결혼이민자 비중은 전체 체류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 체류자의 비중을 의미.
- 2) 국적별 체류 외국인 추이 변화는 2013년 기준 상위 5위 국가만 서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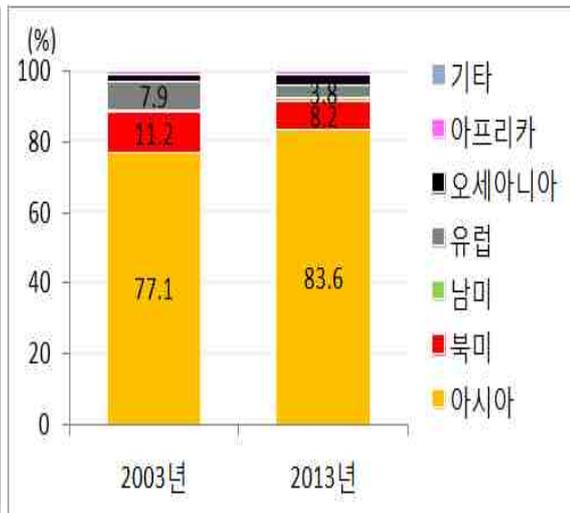
○ 중국 중심 개도국 지역 관광객 유입이 급증

- 관광은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단기방문(C-3), 관광상륙(T-1), 관광취업(H-1)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³⁾
- 한국에 체류하는 관광객은 2003년 149,868명에서 2013년 286,942명으로 약 1.9배 증가, 연평균증가율은 6.7%에 이룸
 - 한편, 동기간 내 전체 체류외국인 가운데 관광객 비중은 22.8%에서 18.2%로 축소
- 국내 관광 체류 외국인의 출신 지역별 비중을 살펴보면 북미와 유럽 비중이 2003년 19.1%에서 2013년 12.0%로 축소되고 있는 반면, 아시아 지역 비중은 77.1%에서 83.6%로 상승
 - 이는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 비중이 2003년 30.4%에서 2013년 40.3%로 크게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
 - 국적별 방한 외래관광객 1인당 지출 경비는 중국 관광객이 2,271.9달러로 가장 많았으나, 일본은 990.0달러로 적은 수준을 나타냄(2013년 기준)⁴⁾

< 관광객 추이 >



< 대륙별 관광객 배출 추이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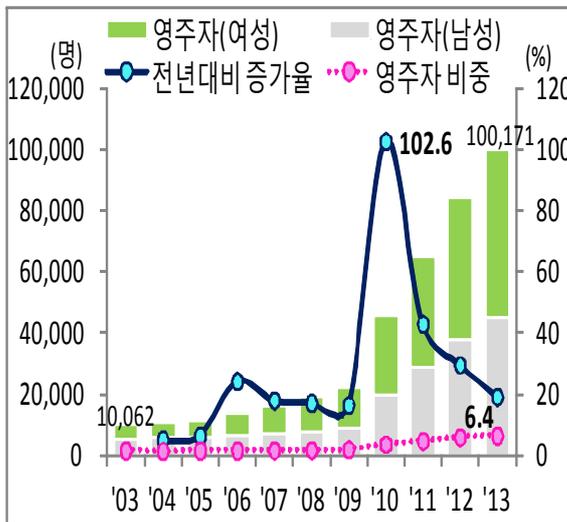
주 : 1) 관광객 비중은 전체 체류외국인 가운데 관광 체류자의 비중을 의미.
 2) 국적별 체류외국인 추이 변화는 2013년 기준 상위 5위 국가만 서술.

3) 이는 법무부의 입국비자와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교, 군인, 영주, 영주가족, 방문동거, 거주 체류자격을 제외한 외국인 입국자를 외래관광객으로 정의.
 4) 문화체육관광부,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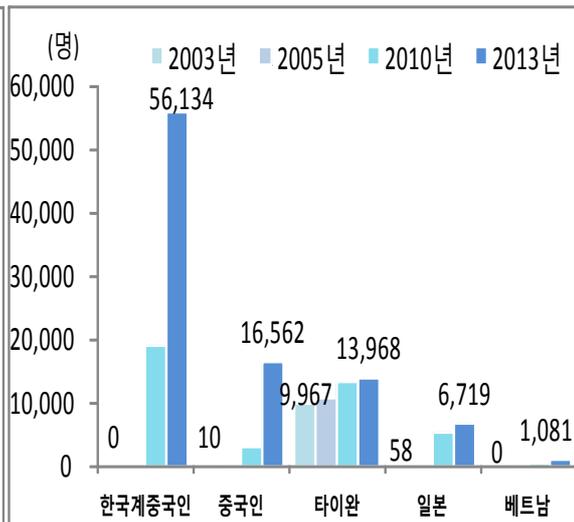
○ 국내 영주자의 경우, 대만 중심에서 한국계 중국인으로 변화

- 영주자는 영주(F-5) 등의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을 의미
- 한국의 총인구 대비 영주자 유입(permanent inflows) 비율은 0.1% 수준으로 OECD 평균 0.6%에 비해 낮은 수준(2011년 기준)⁵⁾
- 한국에 체류하는 영주자는 2003년 10,062명에서 2013년 100,171명으로 약 10배가량 증가했으며, 연평균증가율도 25.8%에 달함
 - 한편, 동기간 내 전체 체류외국인 가운데 영주자의 비중은 2003년 1.4%에서 2013년 6.4%로 확대
- 2003년 기준 국적별 영주자 비중은 대만이 99.1%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2010년에는 한국계 중국인 비중이 42.3%로 급상승한 반면 대만은 29.3%에 불과
 - 2013년에는 한국계중국인이 56.0%, 중국이 16.5%, 대만이 13.9%로 점차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비중이 상승
 - 이는 2010년부터 외국국적동포 가운데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자격 취득을 허용하면서 한국계중국인이 대거 영주자격을 취득하였기 때문

< 영주자 추이 >



< 영주자 배출 상위국 추이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통계연보』 및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년호를 토대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 주 : 1) 영주자 비중은 전체 체류외국인 가운데 영주자의 비중을 의미.
- 2) 국적별 체류외국인 추이 변화는 2013년 기준 상위 5위 국가만 서술.

5) OECD,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2013*. 재외동포(F-4)를 포함할 경우에도 0.4% 수준으로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함.

3. 시사점

- 외국인 유입 증가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완화, 출산을 제고 등을 통한 국내 잠재성장률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반면, 사회보장부담 및 사회갈등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우려도 커지는데 됨
 -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비용을 최소화해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노력이 필요
 - 첫째, 외국인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확립을 통해 전체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종교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 연계되어 외국인 사회통합정책 추진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컨트롤 타워 설치가 필요
 - 둘째,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활용 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단순기능인력의 경우에도 숙련 수준과 직종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 운영과 관리 정책 도입이 필요⁶⁾
 - 전문·숙련인력의 유입을 촉진하여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 노동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단순기능인력의 경우 숙련 수준과 직종에 따라 체류기간을 달리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 모색
 - 셋째, 전문인력 유입 강화를 위한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통해 전문인력 유입 친화적 정책 및 현장 환경 조성이 필요
 - 전문인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설정하여 전문외국인력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인 전문인력 유입 노력을 확대·강화⁷⁾

6) 조경엽·강동관, 『이민 확대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한국경제연구원, 2015.

7) 현재의 법무부 전문인력 분류 기준상의 단기취업, 회화지도, 예술홍행 등 전문인력으로 분류하기 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강동관 외, 『한국의 이주동향 2014』, IOM이민정책연구원.

- 국내 유입 전문인력이 중장기적으로 국내에 기여할 수 있는 현장 토양 조성
이 시급

- 넷째, 유학생 유치는 우수 해외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의미가 큰 만큼 유학생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안정적인 외국 고급 인력 유입 정책을 추진
 - 유학생 지원 및 관리 체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정비하는 한편, 유
학생의 국내 취업 및 장기 체류를 장려하기 위한 취업 알선 제도 및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 다섯째, 중국 등 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와 더불어 관
광산업 전반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선진국 관광객 유입을 가속화할 필요
가 있음
 -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 발급 편의성 강화, 한국 홍보 마케팅
전략 점검, 송출국가의 관광사업체와의 연계 강화 노력이 필요
 -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중국·동남아 등 아시아 신흥국 관광객
은 물론 선진국 관광객 유치 확대 노력이 필요

- 여섯째, 국내 영주 외국국적동포들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는 물론 교육·복지 등 경제·사회 측면의 제반 정책적인
지원 강화 노력이 필요
 - 국내 영주 외국국적동포들의 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 및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

경제연구본부 이해정 연구위원 (02-2072-6226, hjlee@hri.co.kr)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02-2072-6306, buhlee@hri.co.kr)

< 참고 >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외국인의 체류 자격 >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1. 외교(A-1)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사람과 그 가족
2. 공무(A-2)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3. 협정(A-3)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따라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가족
4. 사증면제(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5. 관광·통과(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6. 일시취재(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7. 단기상용(C-2)	삭제 <2011.11.1>
8. 단기방문(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일반연수, 강습,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 수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9. 단기취업(C-4)	일시 흥행, 광고·패션 모델, 강의·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10. 문화예술(D-1)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 관련 활동을 하려는 사람(대한민국의 고유문화 또는 예술에 대하여 전문적인 연구를 하거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유학(D-2)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12. 기술연수(D-3)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
13. 일반연수(D-4)	유학(D-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외에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연수 기관으로부터 체재비를 초과하는 보수(報酬)를 받거나 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취재(D-5)	외국의 신문, 방송, 잡지, 그 밖의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 또는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15. 종교(D-6)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대한민국에 있는 지부 또는 유관 종교단체에서 종교활동을 하려는 사람과 대한민국 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초청을 받아 사회복지활동을 하려는 사람 및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16. 주재(D-7)	가. 외국의 공공기관·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그 밖의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계열회사, 자회사, 지점 또는 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다만,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며, 국가기간산업 또는 국책사업에 종사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본사나 본점에 파견되어 전문적인 지식·기술 또는 기능을 제공하거나 전

	수발하려는 사람(다만, 상장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 중 본사의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7. 기업투자(D-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창업자
18. 무역경영(D-9)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경영하거나 무역, 그 밖의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사람(수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려는 사람을 포함하되,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과 기업투자(D-8)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8의2. 구직(D-10)	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예술흥행(E-6)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공연업소의 종사자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하여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9. 교수(E-1)	「고등교육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0. 회화지도(E-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21. 연구(E-3)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2. 기술지도(E-4)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종사하려는 사람
23. 전문직업(E-5)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그 밖에 국가공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교수(E-1)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4. 예술흥행(E-6)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25. 특정활동(E-7)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
25의2. 연수취업(E-8) 삭제 <2007.6.1>	
25의3.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
25의4. 선원취업(E-10)	「해운법」 제3조제1호 제2호·제5호 및 제23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또는 「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과 그 사업체에서 6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선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원(部員)에 해당하는 사람
26. 방문동거(F-1)	가. 친척 방문, 가족 동거, 피부양(被扶養), 가사정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사보조인 1) 외교(A-1), 공무(A-2)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보기술(IT),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분야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첨단·정보기술 업체에 투자한 외국투자자(법인인 경우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로서 기업투자(D-8), 거주(F-2), 영주

	<p>(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p> <p>4) 취재(D-5), 주재(D-7), 무역경영(D-9),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 자격에 해당하거나 그 체류자격에서 거주(F-2) 비목 또는 영주(F-5) 기목의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전문인력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과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않는 사람</p> <p>라.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p>
<p>27. 거주(F-2)</p>	<p>가.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난민의 인정을 받은 사람</p> <p>라.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과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3)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p>마. 영주(F-5) 체류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 국내 생활관계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강제퇴거된 사람은 제외한다)</p> <p>바. 외교(A-1)부터 협정(A-3)까지의 체류자격 외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7년 이상 계속 체류하여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교수(E-1)부터 전문직업(E-5)까지 또는 특정활동(E-7)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최소 체류기간을 5년으로 한다]</p> <p>사.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체류자격으로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기능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국내에서 받고 있을 것(기술·기능 자격증의 종류 및 임금의 기준에 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2)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것 3)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p>아.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자. 나이, 학력, 소득 등이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p> <p>차. 투자지역,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한 사람 또는 법인의 임원, 주주 등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이 경우 법인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이 투자금액 등을 고려하여 체류자격 부여인원을 정한다.</p> <p>카. 자목이나 차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28. 동반(F-3)</p>	<p>문화예술(D-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사람[기술연수(D-3)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28의2. 재외동포(F-4)</p>	<p>「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단순 노무행위 등 이 영 제23조제3항 각 호에서 규정한 취업활동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p>
<p>28의3. 영주(F-5)</p>	<p>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이고, 본인 또는 동반가족이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는 데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주재(D-7)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p> <p>나.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을 이</p>

	<p>유로 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 부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중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한 결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p> <p>라.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마.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외국국적 동포로서 「국적법」에 따른 국적 취득 요건을 갖춘 사람</p> <p>바. 종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7579호로 일부개정되어 2002. 4. 18. 공포·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별표 1 제27호란의 거주(F-2) 체류자격(이에 해당되는 종전의 체류자격을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1)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p> <p>2)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아.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F-5) 체류자격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p> <p>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차.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카.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해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p> <p>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표 제27호 거주(F-2)란의 사목 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 중 근속 기간이나 취업지역, 산업 분야의 특성, 인력 부족 상황 및 국민의 취업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파. 거주(F-2) 자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서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적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하. 거주(F-2) 차목의 체류자격을 받은 후 5년 이상 계속 투자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서 생계유지 능력, 품행, 기본 소양 등을 고려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필요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 및 자녀(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녀만 해당한다)</p> <p>거. 기업투자(D-8) 다목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p>너. 5년 이상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품행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p>
<p>28의4. 결혼이민(F-6)</p>	<p>가. 국민의 배우자</p> <p>나.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다.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29. 기타(G-1)</p>	<p>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30. 관광취업(H-1)</p>	<p>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협정 등의 취지에 반하는 업종이나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려는 사람은 제외한다)</p>
<p>31. 방문취업(H-2)</p>	<p>가.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만 25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나목의 활동범위</p>

- 내에서 체류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다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사람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등록부 또는 제적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
 -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F-5) 체류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
 - 5) 유학(D-2) 체류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사람의 부모 및 배우자
 - 6) 국내 외국인의 체류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
 - 7)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 시험, 추천 등의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 나. 활동범위
- 1) 방문, 친척과의 일시 동거, 관광, 요양, 견학, 친선경기, 비영리 문화예술활동, 회의 참석, 학술자료 수집, 시장조사·업무연락·계약 등 상업적 용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의 활동
 - 2)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다음의 산업 분야에서의 활동
 - 가) 작물 재배업(011)
 - 나) 축산업(012)
 - 다)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014)
 - 라) 연근해 어업(03112)
 - 마) 양식 어업(0321)
 - 바) 소금채취업(07220)
 - 사) 제조업(10~33).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 자)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38)
 - 차) 건설업(41~42). 다만, 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한다.
 - 카) 산동물 도매업(46205)
 - 타)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46209)
 - 파) 가정용품 도매업(464)
 - 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465)
 - 거)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 네)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 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478)
 - 리) 무점포 소매업(479)
 - 머) 육상 여객 운송업(492)
 - 버) 냉장 및 냉동 창고업(52102). 다만, 내륙에 위치한 업체에 한정한다.
 - 서) 호텔업(55111). 다만,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은 1등급·2등급 및 3등급의 호텔업으로 한정한다.
 - 어) 여관업(55112)
 - 저) 일반 음식점업(5611)
 - 차) 기타 음식점업(5619)
 - 케)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 테)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 페)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
 - 허) 건축물 일반 청소업(74211)
 - 고)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74212)
 - 노)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752)
 - 도) 사회복지 서비스업(87)
 - 로) 자동차 종합 수리업(95211)
 - 모) 자동차 전문 수리업(95212)
 - 보) 모터사이클 수리업(9522)
 - 소) 욕탕업(96121)
 - 오) 산업용 세탁업(96911)
 - 조)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 초) 가구 내 고용활동(97)

자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